

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 
심 사 보 고 서

2022년 12월 1일  
행정재경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년 11월 10일, 고성미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2년 11월 10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최 중  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(2022년 12월 1일)
 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고성미 의원)

### 가. 제안이유

- 금천구에서 열리는 공연·축제·체육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과 안전점검 실시 대상을 확대하고 금천구가 주최하지 않는 행사에도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주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적용범위를 금천구 내 열리는 모든 옥외행사로 확대함(안 제3조)
- 안전관리계획의 수립·시행 대상을 확대함(안 제5조)
- 안전점검 실시 대상을 확대하고 관련 조치를 강화함(안 제6조)
- 금천구가 주최하지 않는 행사에도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

신설함(안 제8조제3항 단서 신설).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- 이번에 발의된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구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구가 출자·출연한 기관에서도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안전관리 주체를 확대하였고
- 또한, 구청장 및 출자·출연기관의 장에게 옥외행사의 후원을 신청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·시행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안전관리 수준을 높였음.
- 무엇보다 제8조3항 단서 신설로 금천구가 주최하지 않는 행사에도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금천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상의법령의 저촉됨이 없고 타 자치구에 비해 선제적이고 시의적절한 조례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